



고용노동부

고 용 노 동 부

수신 대한건설협회장

(경유)

제목 배치전건강진단 관련 건설현장 보건관리 업무 주의 당부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최근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채용전 배치전건강진단이나 채용시 건강검진 자료를無理하게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.

< 배치전건강진단 등 관련 현장 민원 사례 >

□ 일용노동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전가

○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로써 그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함에도 현장 관리자가 정한 검사항목의 건강진단 결과를 일용노동자에게無理하게 요구

☞ 다른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(검사항목)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결과(6개월 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)가 있는 경우 배치전건강진단 실시가 면제됨

* 타 사업장에서 실시한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는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개인 인증 후 인쇄(재발급) 가능

☞ 배치전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특수건강진단기관과 협약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, 일용노동자에게 협약된 건강진단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, 검진 비용은 안전보건관리비로 처리하거나, 정부 재정지원사업(디딤돌)으로 신청 가능함

□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(건설기계 차량운전자 등)에게 채용검진 요구

○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의무가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배치전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하거나,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요구

☞ 채용시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無理하게 요구하지 말고,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

□ 고령노동자에게만 별도의 채용검진 요구

○ 고령자 및 건강이상자를 사전에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고가의 건강검진 결과서를 요구

☞ 개별 노동자의 건강상태와 작업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며,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검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함

3. 귀 협회에서는 위 현장 민원 사례를 회원사에 적극 전파하여 동일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의 안내와 지도에 각별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회원사에서는 보건관리자 등 업무담당자에게 건강진단 업무 처리시 유의할 수 있도록 교육·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우리부는 건설현장 점검 시 법상 의무가 아닌 건강진단 요구, 배치전건강진단 비용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오니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확인 절차 안내문 1부. 끝.



전문위원	한인영	행정사무관	진영훈	산업보건정책과 전결 2026. 1. 22.
협조자	건설산재예방감 독과장	황효정	장	박종일
시행	산업보건정책과-387	(2026. 1. 22.)	접수	
우 30148	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(반곡동 771-62 산업안전보건본부)		/	www.moel.go.kr
전화번호 044-202-8877	팩스번호 044-202-8093		/ hiy79@korea.kr	/ 대국민 공개